

건축사예비종합문제집 3차 정오표 [2017.4.19] [17.2.4 개정법령 반영]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367페이지 (표)	<p data-bbox="427 320 643 349">【2】 주택의 규모제한</p> <table border="1" data-bbox="416 367 1238 633"> <thead> <tr> <th data-bbox="416 367 579 409">구 분</th> <th data-bbox="579 367 1238 409">규 모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6 409 579 633">1. 국민주택</td> <td data-bbox="579 409 1238 633"> <p data-bbox="587 421 1230 483">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p> <p data-bbox="587 488 1230 55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하여 건설, 개량되는 주택</p> <p data-bbox="587 555 1230 618">③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p> </td> </tr> </tbody> </table>	구 분	규 모 기 준	1. 국민주택	<p data-bbox="587 421 1230 483">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p> <p data-bbox="587 488 1230 55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하여 건설, 개량되는 주택</p> <p data-bbox="587 555 1230 618">③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p>
구 분	규 모 기 준				
1. 국민주택	<p data-bbox="587 421 1230 483">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p> <p data-bbox="587 488 1230 551">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하여 건설, 개량되는 주택</p> <p data-bbox="587 555 1230 618">③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p>				

건축사예비종합문제집 2차 정오표 [2017.4.12] [17.2.4 개정법령 반영]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9페이지 (표)	<p>5. 다중이용건축물</p> <hr/> <p>② 다음의 어느하나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hr/>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이후 교재내용 중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p>																
4-9페이지 (표)	<p>【참고】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1. 높이 2m를 넘는</td> <td>• 옹벽·담장</td> </tr> <tr> <td>2. 높이 4m를 넘는</td> <td>• 광고탑·광고판</td> </tr> <tr> <td>3. 높이 5m를 넘는</td> <td>• 태양에너지발전설비</td> </tr> <tr> <td>4. 높이 6m를 넘는</td> <td>• 굴뚝·장식탑·기념탑 •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td> </tr> <tr> <td>5. 높이 8m를 넘는</td> <td>• 고가수조</td> </tr> <tr> <td>6. 높이 8m 이하</td> <td>•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td> </tr> <tr> <td>7. 바닥면적 30㎡를 넘는</td> <td>• 지하대피호</td> </tr> <tr> <td>8. 건축조례로 정하는</td> <td>•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이로 포함)·유희시설 •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td> </tr> </table>	1. 높이 2m를 넘는	• 옹벽·담장	2. 높이 4m를 넘는	• 광고탑·광고판	3. 높이 5m를 넘는	• 태양에너지발전설비	4. 높이 6m를 넘는	• 굴뚝·장식탑·기념탑 •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5. 높이 8m를 넘는	• 고가수조	6. 높이 8m 이하	•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7. 바닥면적 30㎡를 넘는	• 지하대피호	8. 건축조례로 정하는	•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이로 포함)·유희시설 •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1. 높이 2m를 넘는	• 옹벽·담장																
2. 높이 4m를 넘는	• 광고탑·광고판																
3. 높이 5m를 넘는	• 태양에너지발전설비																
4. 높이 6m를 넘는	• 굴뚝·장식탑·기념탑 •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5. 높이 8m를 넘는	• 고가수조																
6. 높이 8m 이하	•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7. 바닥면적 30㎡를 넘는	• 지하대피호																
8. 건축조례로 정하는	•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이로 포함)·유희시설 •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4-18페이지 (표)	<p>15 용도분류</p> <p>① 주요용도분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대분류</th> <th>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1.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가정어린이집 등 포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330㎡ 이하이고 3개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하이고,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td> </tr> <tr> <td>2.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 서 제외한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인 4개 층(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하의 주택 </td> </tr> <tr> <td>11. 야영시설</td> <td>• 300㎡ 미만(관리동, 취사시설 등 포함) 삭제</td> </tr> <tr> <td>11. 업무시설</td> <td>• 금융업소·사무소(500㎡ 이상)</td> </tr> <tr> <td>12. 야영장시설</td> <td>• 야영장(300㎡ 미만)</td> </tr> </tbody> </table>	대분류	소분류	1.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가정어린이집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330㎡ 이하이고 3개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하이고,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 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인 4개 층(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하의 주택 	11. 야영시설	• 300㎡ 미만(관리동, 취사시설 등 포함) 삭제	11. 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500㎡ 이상)	12. 야영장시설	• 야영장(300㎡ 미만)				
대분류	소분류																
1.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가정어린이집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330㎡ 이하이고 3개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하이고,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하며,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 서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인 4개 층(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하의 주택 																
11. 야영시설	• 300㎡ 미만(관리동, 취사시설 등 포함) 삭제																
11. 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500㎡ 이상)																
12. 야영장시설	• 야영장(300㎡ 미만)																

4-34페이지
(65번 문제 해설)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포함)	③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④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것	-

4-43페이지
4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①~⑨번
내용교체)

4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1) 평가대상

1. 초고층 건축물

2. 건축물 한동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

(2) 평가절차

①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신청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평가항목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용부담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평가 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하게 한다.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45페이지 (내용추가)	<p>2. 건축신고</p> <p>[1] 신고대상</p> <p>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⑦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또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판 등의 공작물</p> <p>[2] 건축신고의 취소</p> <p>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취소된다. 단,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p>								
4-56페이지	<p>④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시기에 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4-61페이지 (09기출문제)	<p>[09기출]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지하층은 없음)</p> <p>㉠ 4층인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4,000m²인 경우</p>								
4-62페이지 (표)	<p>① 1년 이내의 업무정지</p> <table border="1" data-bbox="424 1108 1244 1406">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 <th colspan="2">위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50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51조) • 중대한 과실로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 유발 </td> <td>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td> </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위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50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51조) • 중대한 과실로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 유발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대상 건축물	위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50조)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51조) • 중대한 과실로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 유발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4-63페이지 (표)	<p>②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p> <table border="1" data-bbox="424 1529 1244 1863">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 <th>위반사항</th> <th colspan="2">업무정지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49조) <p style="text-align: center;">:</p> </td> <td>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1억원 이상으로 서 도급금액의 10%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의 경우 <p>6개월 이내</p> </td> </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위반사항	업무정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49조) <p style="text-align: center;">:</p>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1억원 이상으로 서 도급금액의 10%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의 경우 <p>6개월 이내</p>
대상 건축물	위반사항	업무정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41조) • 건축물의 구조(48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49조) <p style="text-align: center;">:</p>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1억원 이상으로 서 도급금액의 10%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의 경우 <p>6개월 이내</p>						

4-69페이지
(표)

13. 철거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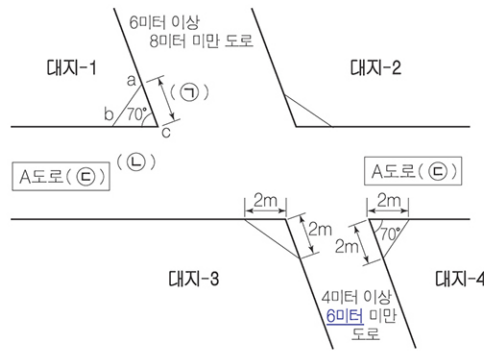
4. 신고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신고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 기관석면조사결과사본(해당되는 경우)

4-90페이지

② 공개공지 설치대상건축물(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이 아니더라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 완화규정을 준용한다.

4-95페이지
(16기출문제)

16기출 건축법령상 건축선 지정과 관련하여 그림 a c(㉠), b c(㉡)의 길이와 A도로의 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123페이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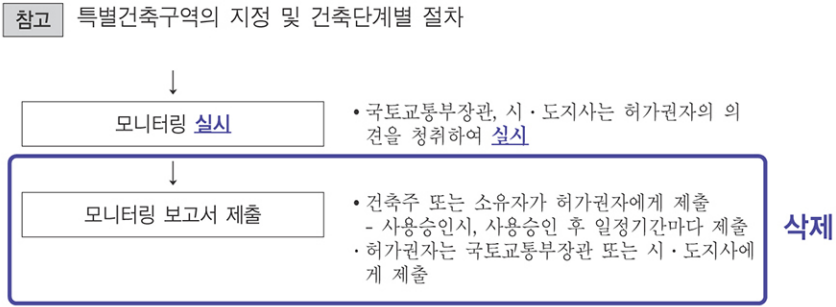
2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합계	비 고
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수련시설 • 체육관, 운동장 및 강당 •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 관광휴게시설	500m ² 이상	-
5. • 3층 이상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예외 2층 이하인 경우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발 전소,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시설(화장시 설·동물화장시설 제외)은 제외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130페이지 (1번문제)	㉔ 층수 : 2층 이상		
4-130페이지 (3번문제)	㉔ 층수가 1층 이라도 처마높이가 9m 이상이면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5페이지 (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td> </tr> <tr> <td style="padding: 2px;">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td> </tr> </table>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4-146페이지 (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층고 1.5m 이하인 다락의 면적</td> </tr> <tr> <td style="padding: 2px;">2. 옥상, 옥외, 지하에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td> </tr> </table>	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층고 1.5m 이하인 다락의 면적	2. 옥상, 옥외, 지하에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층고 1.5m 이하인 다락의 면적			
2. 옥상, 옥외, 지하에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4-147페이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비고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면적도 적용완화규정에 따라 용적률 산정시 제외됨. </div> 삭제		
4-156페이지 (10기출문제)	10기출 건축법상 필로티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㉔ 다가구주택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156페이지 (16기출문제)	16기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㉔ 반자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4-161페이지 (그림)	<p style="text-align: center;"> $D_1 \geq 1.5m$ $D_2 \geq h \times \frac{1}{2}$ </p>		
4-163페이지 (9번 문제 및 해설)	9 창고의 내민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기준요소를 옳게 조합한 것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조 건】</p> <p>㉔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만의 건축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p> <p>㉕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만의 건축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p> <p>㉖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3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p> <p>㉗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m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p> </div>		
	해설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194페이지
(참고)



4-201페이지
(16기출문제)

16기출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㉔ **건폐율**은 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10페이지
(표)

1 공작물의 범위

공작물의 종류	규 모
1. 옹벽·담장	높이 2m를 넘는 것
2. 광고탑·광고판 등	높이 4m를 넘는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높이 5m를 넘는 것
4. 굴뚝·장식탑·기념탑 등	
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높이 6m를 넘는 것
6. 고가수조 등	높이 8m를 넘는 것
7.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높이 8m 이하 (난간높이를 제외)인 것
8.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를 넘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유흥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4-212페이지
(참고)

참고 다중이용 건축물 **삭제**
 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

4-212페이지
(96기출문제)
(99기출문제)
(07기출문제)

96기출 지방건축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틀린 것은?

㉔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99기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㉔ 바닥면적 15,000㎡인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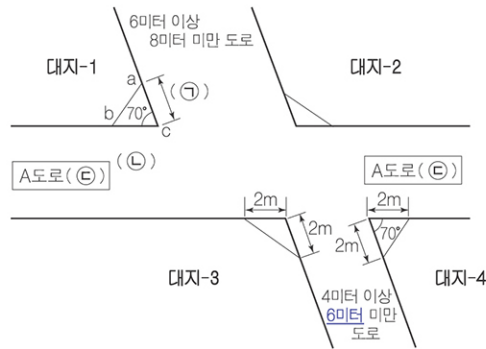
07기출 건축법령상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㉔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213페이지 (10기출문제)	<p>107기출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p> <p>㉠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인 건축물</p>
부록 4-27페이지 (2009년-136번 문제 및 해설)	<p>136.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지하층은 없음)</p> <p>㉠ 4층인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4,000㎡인 경우</p> <p>해설 건축사보 상주 공사감리 대상 ㉡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p>
부록 4-56페이지 (2010년-130번 문제 및 해설)	<p>130.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p> <p>㉠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식물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인 건축물</p> <p>해설 다중이용건축물 1. 용도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삭제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p>
부록 4-56페이지 (2010년-132번 문제)	<p>132. 건축법상 필로티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p> <p>㉠ 다가구주택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p>
부록 4-115페이지 (2012년-121번 해설)	<p>해설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삭제</p>
부록 4-115페이지 (2012년-123번 해설)	<p>해설 석면조사결과 사본은 착공신고서와 철거·멸실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p>
부록 4-115페이지 (2012년-124번 해설)	<p>해설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p>
부록 4-236페이지 (2016년-123번 해설)	<p>해설 다중이용건축물 삭제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에 한한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p>

부록
4-237페이지
(2016년-128번
그림 및 해설)

128. 건축법령상 건축선 지정과 관련하여 그림 a c(㉠), b c(㉡)의 길이와 A도로의 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설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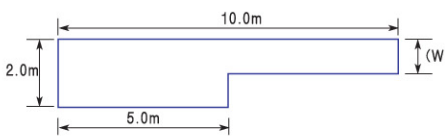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8 > D \geq 6$	$6 > D \geq 4$
90° 미만	$8 > W \geq 6$	4m	3m

부록
4-240페이지
(2016년-142번
문제)

142.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건폐율은** 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사예비종합문제집 1차 정오표 [2017.3.27] [17.2.4 개정법령 반영]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청색 글씨-수정된 부분)
4-146페이지 (그림)	<p>04기출 그림과 같은 간이 화단을 설치하지 않는 노대에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려면 돌출길이(W)로 가장 타당한 것은?</p>  <p>Ⓐ 1.0m ⓐ 1.2m Ⓑ 1.5m ⓑ 1.8m</p> <p style="text-align: right;">답 : 가</p>